

[서식 예] 지급명령신청(구상금청구의 독촉사건)

지 급 명 령 신 청

채권자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구상금청구의 독촉사건

청구금액: 금 〇〇〇원

신 청 취 지

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○○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독촉절차비용 금 〇〇〇원

- 내 역 -

금 ○○○원 (첩용인지대)



금 000원 (송 달 료)

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채무자가 20○○. ○. ○. 신청외 ◈◈◈로부터 금 ○○○원을 이자는 월 ○%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서,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차용금증서상 연대 보증인으로 기명・날인하여 채권자는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.
- 3.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 변제한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
 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 대위변제 확인서 1통

1. 영수증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0. 00.

위 채권자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당 사 자 표 시

채권자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〈〉〈〉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구상금청구의 독촉사건

청구금액:금 ○○○원

신 청 취 지

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○○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독촉절차비용 금 〇〇〇원

- 내 역 -

금 ○○○원 (첩용인지대)

금 000원 (송 달 료)



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채무자가 20○○. ○. ○. 신청외 ◈◈◈로부터 금 ○○○원을 이자는 월 ○%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서,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차용금증서상 연대 보증인으로 기명・날인하여 채권자는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.
- 2. 그 뒤 20○○. ○.경부터 채무자가 위 대여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여금 대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신청외 ◈●●는 연대보증인인 채권자에게 원리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하여 채권자는 20○○. ○○. ○. 위 대여금의 원금 및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○.까지 ○○개월간의 월 ○%의이자 금 ○○원 등 합계 금 ○○○원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였습니다.
- 3.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 변제한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
 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기간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	관 련 법 규	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
불복절차 및 기 간	{신청인(채권자)} · 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함(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). {피신청인(채무자)} ·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(민사소송법 제470조) ·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70조)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의 의	금전, 그밖에 대체물(代替物)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 령을 할 수 있음. 다만,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(민사소송법 제462조).		
지급명령과 집행(민사집 행법 제58조)	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.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.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,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.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. ④집행문부여의 소,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.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.		



- ※ (1)관할법원(민사소송법 제463조, 제7조 내지 제9조, 제12조, 제18조)
 - 가.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
 - 나.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
 - 다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
 - 라. 어음 · 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
 - 마.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
 - 바.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. 선박 또는 항 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 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.